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0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55525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합7557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0.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01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0.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이 사건 건축공사"를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지하 7층부터 지상 3층 바닥의 골조공사"로 고친다.

○ 4면 5)항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위 공사대금지급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5. 8. 19.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앞서 본 일부 철근 부족으로 인한 내력 보강공사비용 등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540,598,032원이 인정되었다(다만 책임제한으로 그 중 90% 금액이 상계항변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01

로 인용되었다).】

○ 4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지상 1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은 지상 19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위 소송은 원고들이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필종합건설이 원고 A을 상대로 먼저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축공사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01

부과처분 목록

원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원고1	177,848,711	169,833,930
원고2	8,525,890	1,321,230
원고3	8,496,740	1,316,670
원고4	8,525,890	1,321,230
원고5	8,525,890	1,321,230
원고6	8,511,320	1,318,950
원고7	8,453,010	1,309,840
원고8	8,423,850	1,305,290
원고9	8,453,010	1,309,840

끝.